

문화재 등 상속세 물납 (철회)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관리번호		-			
신청인	① 성명		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소	(☎)		④ 전자우편주소	
신청 내용	⑤ 납부세액			⑥ 물납신청세액	
	⑦ 유형	[] 신고분 [] 고지분		⑧ 납부기한	
세무대리인		성명	사업자등록번호	생년월일	연락처

문화재 등 물납대상 재산명서

⑨ 구분	⑩ 작품명	⑪ 작가명	⑫ 규격	⑬ 평가 기준일	⑭ 시가 또는 전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					
					시가	감정 기관	평가액	감정 기관	평가액	평균액
⑰ 계										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제3항, 제75조의3제5항 및 제75조의4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([]물납을 신청, []물납 신청을 철회)합니다.

이	이	이
---	---	---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공과금 납세필증 1부 2. 물납을 신청한 문화재 등의 역사적·학술적·예술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3. 전문감정기관별 감정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

작성방법

-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상속재산에 문화재 및 미술품이 포함된 경우
 -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
 -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(제13조 다른 증여재산가산액 제외)을 초과할 것
- "㉗ 유형"란은 해당되는 항목에 √ 표시를 합니다.
- "㉙ 구분"란은 문화재 및 미술품(부동산은 제외)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. ~ 아.를 적습니다.
 - 가.-1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
 - 가.-2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 중 국가등록문화재
 - 가.-3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 중 시·도지정문화재
 - 가.-4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 중 시·도등록문화재
 - 가.-5. 그 밖의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
 - 나.-1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민속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
 - 나.-2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민속문화재 중 국가등록문화재
 - 나.-3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민속문화재 중 시·도지정문화재
 - 나.-4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민속문화재 중 시·도등록문화재
 - 나.-5. 그 밖의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민속문화재
 - 다. 회화
 - 라. 판화
 - 마. 조각
 - 바. 공예
 - 사. 서예
 - 아. 그 외 미술품
- "㉛ 평가기준일"란은 '상속개시일' 을 적습니다.
- "㉜ 시가 또는 전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"란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0조에 따른 '시가' 가 있는 경우 '시가' 를 적고, '시가' 가 없는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습니다.
- 물납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 시 작성한 물납대상 재산명세 중 물납을 철회하려는 재산명세를 적습니다.

※ 물납 철회 사유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참고